

현 지 조 치 요 구 서

■■■■장 귀하

2026년 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오니
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5. 26.

처인구 자치행정과장 김 진 희

일련번호	수감기관	행정상조치	재정상조치		신분상조치
			조치방법	금 액	
1	■■■■ 행정복지센터	주 의	-	-	없 음

제 목 : 특별휴가(임신검진휴가) 관리 부적정

1. 업무개요

처인구 ■■■■ 총무팀(이하 ‘■■■■’ 이라 한다)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른 특별휴가(가족돌봄휴가 및 간병휴가)를 운영하고 있다.

2.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(특별휴가)에 제9항 따르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- 1)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“어린이집등”이라 한다)의 휴업·휴원·휴교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

※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원 및 임시휴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요건에 해당

- 2) 자녀·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
- 3) 미성년자이거나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·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
- 4) 질병, 사고,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, 외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... 중략 ...

또한,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부서장은 관련 증빙서류(어린이집등의 휴업·휴원·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학부모 알림장, 가정통신문, 병원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, 확인서, 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)를 확인하여야 하고 교통상황, 왕복 소요시간, 소속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‘가족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(시간)’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마지막으로,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(특별휴가) 제21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간병(병원진료, 입원 등)을 요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 연간 3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그럼에도 불구하고 ■■■■은 아래 [표]와 같이 특별휴가 승인 내역 중 ◇◇건에 대하여 증빙서류(병원진료와 같이 사전에 증빙서류 첨부가 불가한 경우 사후첨부가능)가 첨부하지 않은 채 가족돌봄휴가 및 간병휴가를 사용하였다.

[표] 가족돌봄 휴가 및 간병휴가 증빙서류 누락 내역

연번	특가 구분	직급	성명	사용일시	특가 일수	사 유	첨부 여부	비고

4. 조치할 사항

■■■장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【주의】

5. 회보여부 : 불필요